

예 산 총 칙

2019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19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241,443,000	7,243,290
일반회계	239,500,000	7,185,000
특별회계	1,943,000	58,290
기타특별회계	1,943,000	58,290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304,000	9,120
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	1,476,000	44,280
지하수관리특별회계	163,000	4,890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,997,294천원으로 한다.
(일반예비비 1,497,294천원, 재해재난목적예비비 500,000천원)

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2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